

2026년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총칙

제1조 :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
일반회계	366,172	

제2조 :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 예산 ”과 같다.

제3조 : 세입예산은 해당 관·항·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,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수입 조치한다.

제4조 : 세출예산 중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규정에 불구하고 관, 항간에 상호전용 충당할 수 있다.

① 인건비 ② 공공요금 ③ 퇴직적립금

④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,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

제5조 :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은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할 수 있다.

제6조 : 본 예산을 집행하는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.

제7조 : 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및 지방자치 단체보조금, 지정후원금, 복지사업수입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